	등록번호	20231456	홈페이지
	최초등록일	2023-10-06	홈페이지 준비중
	최종등록일	2024-11.21	

우나기칸 (UNAGI KHAN)

정보공개서

“우나기칸 대전본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우나기칸 대전본점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89, 3층(월평동)

T. 042-477-6339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042-477-6339]

우나기칸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 및 가맹사업의 내용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기타 가맹사업 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10. 광고·판촉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우나기칸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0.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직영점 목록 및 주소
2.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우나기칸 대전본점	우나기칸 (UNAGI KHAN)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89, 3층(월평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	전화번호 및 팩스
	개인사업자	2022.04.01	이은서	T. 042-477-6339
	법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399-17-0176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서 바로 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 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우나기칸 (UNAGI KHAN)	없 음
상 호	우나기칸 (UNAGI KHAN) OO 점	없 음

우나기칸

상표 (서비스표)		'1-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참조
그 밖의 영업표지	-	동일브랜드명의 그 밖의 로고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현황 요약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	-	-	346,792	-	-
2023	9,081	7,850	1,231	605,866	38,267	39,739
2024	0	0	0	546,622	0	0

- 당사는 2023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2022년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4년귀속 재무현황과 관련하여 현재(2025년 3월) 재무제표 미확정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액으로 기재하였으며 2024년귀속 재무제표 확정시 변경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직영점포함)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이름	직위	사업경력
----	----	----	------

우나기칸

여부			기간	사업체명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은서	대표	2022.04.01~ 현재	우나기칸 대전본점	사업총괄

7. 가맹본부의 임직원수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 『우나기칸 (UNAGI KHAN)』 가맹사업 외의 동일 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우나기칸 (UNAGI KHAN)』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 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사용기간)
	<서비스표> 제 43 류	출원일 2022.12.14 등록일 2023.04.03	출원번호 4020220229715 등록번호 4020009240000	이은서	2033.04.03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나기칸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우나기칸 (UNAGI KHAN)』 가맹사업 시작일은 계약체결일 기준 2024년 6월 1일입니다.

- 『우나기칸 (UNAGI KHAN)』 직영사업 시작일은 2022년 4월 1일입니다.

2. 가맹사업 연혁

『우나기칸 (UNAGI KHAN)』에 대한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우나기칸 세종본점	우나기칸 (UNAGI KHAN)	이은서	22.04.01 ~24.07.16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2층 206호(보람동, 스마트허브III)
우나기칸 대전본점	우나기칸 (UNAGI KHAN)	이은서	24.07.17 ~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89, 3층 (월평동)

- 상기 가맹사업 경영기간의 최초시작일은 당사의 『우나기칸 (UNAGI KHAN)』 직영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표기 하였습니다

3. 가맹사업 업종

『우나기칸 (UNAGI KHAN)』에 대한 가맹사업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우나기칸 (UNAGI KHAN)	일식	히츠마부시, 우나쥬, 스케이프동

- 히츠마부시(일본어: ひつまぶし)는 장어를 이용한 일본의 장어덮밥 요리를 의미함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우나기칸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우나기칸 (UNAGI KHAN)』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	1	4	3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1	-	1
울산	-	-	-	-	-	-	-	-	-
세종	1	-	1	1	-	1	1	1	-
경기	-	-	-	-	-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1	1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 개년도 말 『우나기칸 (UNAGI KHAN)』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해당무					

우나기칸

2023	해당무					
2024	0	3	0	0	0	3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기타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우나기칸 (UNAGI KHAN)』 가맹사업 외 현재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타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지역별 연간평균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에 올린 연간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가맹점 수	2024년 연평균 매출액(단위:천원, VAT미포함)						비고
		연평균 매출액		상한 매출액		하한 매출액		
		연평균	3.3㎡당	상한	3.3㎡당	하한	3.3㎡당	
전체	3	396,618	15,254	416,926	15,679	376,311	14,890	산출:2개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1	-	-	-	-	-	-	5곳미만
경기	1	-	-	-	-	-	-	5곳미만
강원	-	-	-	-	-	-	-	-
충북	1	-	-	-	-	-	-	5곳미만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우나기칸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 (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가맹점 운영개월수가 6 개월 미만인 경우와 매출액 관련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자료를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연간평균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추정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3 항·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조 제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우나기칸 (UNAGI KHAN)』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3 개	140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의 『우나기칸 (UNAGI KHAN)』 가맹사업관련 연간광고 및 판촉비 내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우나기칸

광고	온라인 광고 등	2024.1~12	0	0	-	
----	-------------	-----------	---	---	---	--

11. 가맹금 예치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금 예치은행에 의한 예치제도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보험인 (보험회사)	(주) 서울보증보험 T.1670-7000
보험계약자 (가맹본부)	우나기칸 대전본점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발급일로부터 2 개월 또는 가맹점영업개시일중 빠른 시점
보험금액	예치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우나기칸 (UNAGI KHAN)』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5,500	계약 체결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5,500	계약 체결일	교육 개시 이전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전 교육비

- 개점홍보비와 관련하여 당사는 오픈홍보 없이 영업을 시작하며 오픈홍보를 희망하시는 가맹점주님께서서는 각자의 부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당사에서는 현재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운영방침이 변경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고 재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보증금에 관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나기칸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예치가맹금액
합계	₩ 11,000
가맹비	₩ 5,500
교육비	₩ 5,500
개점홍보비	해당없음 (자체진행가)
이행보증금	해당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및 금전 지급방법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간판, 인테리어 등 기타 비용 (기준: 99㎡ (30평) /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지급 대상	총 금액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총 계]	-	[83,600]	-	-	-
간판	업체자율	4,400	-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인테리어 (실내)		49,500	[1,650]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주방설비	별첨3. 참조	16,500	[550]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주방집기	업체자율	8,800	-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초도물품	별첨2. 참조	4,400	-	계약시 협의결정	물품발주전 계약해지시

우나기칸

POS 설비	협력업체	렌탈형 (월사용료有)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별도사항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음향설비,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정화조공사, 전면유리, 샷시공사, 어닝, 소방공사, 상하수도, 냉난방공사, 방수공사, 가스공사, 전기승압공사, 외부닥트공사, 익스테리어공사, 테라스, 화장실 등				

- 위 표의 금액은 추정치로서 매장규모 및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간판은 1면 전면간판 기준이며, 매장규모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는 매장규모 및 매장 현장상황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방매장 또는 대형마트내, 백화점내 등 특수상권의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장전용평수가 33㎡ (10평)미만의 경우에는 최소 기본자재의 소요가 33㎡(10평)과 동일하여 33㎡ (10평)기준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귀하는 인테리어에 관하여 귀하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귀하는 당사가 파견하는 인력에 의한 **디자인 컨셉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총 가맹점 면적에 대하여 **3.3㎡당 11만원(부가세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방설비는 면적과 상관없이 최소기본설비가 필요하므로 상기 기재된 평당 단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권장품목에 대해 귀하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당사가 요구하는 디자인, 규격, 사양, 품질 등에 맞게 구비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초도물품과 관련하여 초도 발주물량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업종변경의 경우, 별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

우나기칸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위생교육 수료자, 보건증 소지자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 귀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8)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우나기칸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 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해당없음				
영업표지변경에 따른 간판변경비	업체자율 (요청시 협력업체 IV-7참조)	교체보수 필요시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
점포환경 개선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중 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시후 반환불가	-
광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실시후 반환불가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금전지급 의무의 지급기한 경과시 부담.
POS 월사용료	요청시 오케이포스	월 [11~55]	지정업체와 협의	해당사항 없음	사용 대가 지급	사용량에 따라 변동

- 광고판촉분담비에 관하여는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분담비용에 관하여는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중 1.점포환경개선시 비용지원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점이후 교육비에 관하여는 “VIII-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의 『우나기칸 (UNAGI KHAN)』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우나기칸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차액가맹금에는 물류비용과 인건비, 개발비, 홍보비, 관측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의 실질적 이득금은 상기 금액보다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관리 등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상태 및 취급품목, 실제재고의 수량조사,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부정기	문의 042-477-6339
회계처리	영업장부 및 회계자료의 작성유지 여부, 연매출액에 대한 자료요청 및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1년 1회이상 및 요청시	문의 042-477-6339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우나기칸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기간에 한합니다.

-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당사가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기간에 한합니다.

-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기간,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나기칸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기간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① 귀하가 운영하는 『우나기칸 (UNAGI KHAN)』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귀하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양도에 앞서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서면승인을 얻은 후에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가 기존계약의 승계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와 이행보증금(해당무)**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반면,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의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이행보증금(해당무)**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가맹계약 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우나기칸 (UNAGI KHAN)』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전화번호안내, 포털사이트, 배달어플 등록 등)을 계약해지 및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반환 하거나 가맹본부의 승인 하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가맹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 내용이나 고객을 넘겨 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공급물

우나기칸

품의 특성상 유통기간 및 부패, 오·훼손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최근 2개월 이내에 공급된 상품으로서 미사용 물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품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우나기칸 (UNAGI KHAN)』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물품 구입 및 임차 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원부재료중 강제품목은 가맹본부(협력업체 포함)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품목 중 권장품목을 귀하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요구하는 디자인, 규격, 사양, 품질 등에 맞게 구비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2024년 가맹사업 준비중으로 해당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우나기칸

귀하가 『우나기칸 (UNAGI KHAN)』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1)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우나기칸 (UNAGI KHAN)』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나 주선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강제하는 특정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가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우나기칸 (UNAGI KHAN)』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 제공상품 일체 - 하단 3) “상품품목 및 권장가격”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제한 3 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에는 제외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우나기칸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우나기칸 (UNAGI KHAN)』의 타 가맹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물품	거래상대방별로 왼쪽에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당사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2 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미성년자	주류	3 회 위반: 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덮밥류 (메인)	히츠마부시	34,000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통지, 홈페이지 공지 등	2025년 3월 기준 (계절 및 지역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특히츠마부시	49,000		
	우나쥬	31,000		
	특우나쥬	46,000		
	스테이크동	18,000		
	특스테이크동	30,000		
	멘타이쥬(1 줄)	20,000		
	멘타이쥬(2 줄)	23,000		
사이드	냉소바	10,000		

우나기칸

식사류	비빔소바	10,000		
	온소바	10,000		
	장어탕	13,000		
사이드 튀김류	감자고로케 4p	6,000		
	버터플라이 예비덴 뿌라 4p	6,000		
	치킨가라아게 12p	12,000		
음료	코카콜라	2,000		
	코카콜라제로	2,000		
	스프라이트	2,000		
	환타 오렌지	2,000		
	환타 파인	2,000		
	산가리아 메론소다	5,000		
	산가리아 라무네	5,000		
사케	준마이 750	35,000		
	간바레 오토상	40,000		
	센 300	8,000		
	요하찌로(도쿠리)	10,000		
	준마이다이긴조	60,000		
	누벨준마이긴조	90,000		
돈가스류	등심돈카츠	12,000		
	통모짜치즈돈카츠	13,000		
	안심돈카츠	15,000		
기타	소바면추가	3,000		

우나기칸

	소바육수추가	4,000		
	장어뼈센베이 30g 추가	3,000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히츠마부시 (일식 장어덮밥류) 요리를 주메뉴로 판매하는 외식업	우나기칸 (UNAGI KHAN)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상권에 따라 상이하나 영업거점 주소지로부터 반경(직선거리) 2 Km 의 범위를 원칙으로 함	계약체결시 별첨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 다만, 영업지역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대형쇼핑센터, 지하상가, 공항, 호텔, 종합 병원 등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본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우나기칸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90 일 사이 통보)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계약기간 만료 전 60 일이내 합의여부 회신) → 영업지역 변경완료</p>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우나기칸 (UNAGI KHAN)』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우나기칸 (UNAGI KHAN)』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우나기칸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직영 및 기타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53%	47%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상품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 및 수정, 해지

1) 가맹계약의 기간

『우나기칸 (UNAGI KHAN)』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 시에도 2년씩 연장됩니다.

우나기칸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 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우나기칸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조 2항 각호1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 후 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조 3 항	25 조

우나기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1 항 각호 및 31 조 1 항 2 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3 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 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7 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의 명의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20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개발·변경·판매·사용하는 경우	21 조 2 항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메뉴 및 변경·수정·보완된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1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에 대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 조 6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필수 강제(사입금지)품목을 자점매입 하거나 품질검사를 2 회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 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및 보고사항 등에 관하여 허위로 통지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28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판촉의 광고·판촉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30 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나, 사전 승인 없이 점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35 조 3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지불할 대금지급이 지급기일까지 미이행된 경우	25 조 1 항 16 호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 조 1 항 17 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 호	

나.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31 조 3 항

우나기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각호 1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절차 없이 즉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건
<p>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p> <p>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p>	31조 4항 각호1
<p>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p>	
<p>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p>	
<p>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p>	
<p>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p>	
<p>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p> <p>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p>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2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이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당사의 시정이 없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건
당사가 부여한 영업거점 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	31조 2항 각호1

우나기칸

지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 개월 전에 해지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요청 후 양 당사자가 서면합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갱신 시 가맹계약서의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 일 이내에 합의 여부 회신 →합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 상기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상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본 계약에 따른 사업 등과 관련된 법령이 본 계약 발효일 이후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속히 상호 협의해 법령에 부합하게 본 계약의 내용을 수정, 변경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며, 이를 위한 어느 일방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나기칸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 (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42-477-6339

-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게 **교육비와 이행보증금(해당부)**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이행보증금(해당부)**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 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양수인이 가맹본부가 주관하는 **개점홍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점홍보비**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서면 통지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우나기칸

업무위탁	불가능	-	-	가맹본부 외 제3자의 위탁 경영불가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 없이 『우나기칸 (UNAGI KHAN)』 과(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제한지역	경업허가절차
계약기간 중	히츠마부시 (일본 장어덮밥류) 요리를 주메뉴로 판매하는 외 식업	국내 전지역	해당사항없음 (문의 042-477-6339)
계약해지 및 종료 후 6 개월		기존 동일영업지역 내	

-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우나기칸 (UNAGI KHAN)』 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우나기칸 (UNAGI KHAN)』 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 율 (11시~22시 권장)	주 6일 이상 (단, 특수상권은 해당상권내 영업방침을 따름)	문의 042-477-633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나기칸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의 제한에 있어서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점주자율	직접 근무 권장	제한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빈도 및 시기
Quality(메뉴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분기1회 이상 수시 관리·감독 (당사: 042-477-6339)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우나기칸 (UNAGI KHAN)』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 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브랜드 및 상품 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측 50%(1/N)	행사 계획 공고 → 가	1. 대중매체광고 등 광고에

우나기칸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측 50%(1/N)	맹점부담액 제시 → 가 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광고비 납부	따라 필요시 분 담 절차는 변동 될 수 있음. 2. 가맹점사업자 비용부담시는 50%이상 동의시 시행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판촉 행사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차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측간 균등분담 원칙)		상기와 동일	가맹점사업자 70%이상 동의시 또는 동의점주 대상시행
	개별행사	가맹점 100%부담			

-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내 개별 광고 및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절차는 없으나 본사의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에 보호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

우나기칸

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임을 인정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위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거나 공개하거나 본 계약에 의한 가맹점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부여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지속된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변심 등 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아래의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할인이나 지원 받은 금전 또는 무상으로 지원받은 설비나 상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도 및 승계,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해당 점포의 내·외장 공사 등을 착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미 진행된 내외장 공사 관련 비용 및 해약에 따른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시간 이내	100 만원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시간 이후 10 일 이내	200 만원
계약 체결 후 10 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300 만원
가맹점 오픈 후 계약기간 만료 전 (단, 잔여개월수 6개월 초과시는 6개월로 정함)	100만원 * 잔여개월수 (최대위약금은 600만원)

- ③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 17 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우나기칸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18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사에 위약금으로 **십이천만원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제23조(자점매입)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강제)품목을 자점매입(사입)하는 경우, 당사에 “자점매입(사입)한 금액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 및 종료시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1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배상금은 최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제 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당사가 지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등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상대방은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⑨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VI.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5 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중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42-477-6339)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D-45	
1 차 상담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4	
점포 개발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최종 협의	D-30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예치 (단, 피해보상보증보험 발행시는 예치하지 않음.)	D-29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8	
도면 작성 및 인테리어공사	- 인테리어협의 / 별도 / 추가공사 -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D-27~2	
교육	- 교육(개점전 교육)	D-9~2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물품공급	D-1~2	
오픈	-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점포선정의 지연 내지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의 지연 등 오픈 준비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우나기칸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되며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자문절차

1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	귀하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 14 일 이전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선택방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 후 귀하가 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연락을 취하고 방문합니다.
3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4	자문확인서 수령 (14 일->7 일 단축희망시)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5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6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 일이 지난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역
점포환경 개선 사유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최소 5년으로 한다.) ②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① 간판교체 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우나기칸

	<p><분할지급 시 절차></p> <p>○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p>
비용부담 제외사유	<p>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p>
비고	<p>집기·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p>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의 제공 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 부담	비고
가맹본부 필요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042-477-6339

우나기칸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협의 후 개별계약체결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함.	가맹점 부담
-------------------	---	---	-----------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영지도는 개별 요청사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협의 후 개별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우나기칸 (UNAGI KHAN)』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자금지원이나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우나기칸 (UNAGI KHAN)』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메뉴교육	메뉴교육, 주방관리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서비스 및 운영 교육	접객방법, 마인드 교육, 위생교육, 매장운영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우나기칸 (UNAGI KHAN)』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교육시간	비고
수시교육	신메뉴 및 필요시 전달교육 등	실습교육	1일(3~6h)	신메뉴출시 및 필요 시
특별교육	점주의 요청에 의한 특별교육	실습 및 강의교육	1일(3~6h)	가맹점주 요청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우나기칸 (UNAGI KHAN)』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나기칸

구분		최소시간	비용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7 일 (49h~56h)	IV-1) 최초가맹금 중 교육비 참조	최초 계약시 이수 (1 일당 7~8 시간 교육기준)
개점 후 교육	수시 교육	1 일(3~6h)	기본이론교육 무료 실비 발생시 청구	신메뉴 및 필요시 전달교육 등
	특별 교육	1 일(4~8h)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관리자 등) 1 인 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와 종업원 1 인 이외의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불하고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 목록 및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세종	세종본점	세종시 호려울로 19, 2층 206호(보람동, 스마트허브III)

- 1번 직영점은 가맹본부겸 직영본점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24.7.17자로 세종에서 대전으로 주소이전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	2년 9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2024	545,622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나기칸

별첨 1. 재무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우나기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우나기칸

별첨 2. 상품, 원부재료 필수강제/권장 품목 및 주요품목 공급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